###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5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황정아·박주민·이용선

염태영 • 박홍근 • 이원택

김남희 · 김문수 · 서영교

이기헌・박 정・박정현

김남근 • 이성윤 • 김용만

황명선 · 오세희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기술사법」의 개정)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

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원자력안전법」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기술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부) ①
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1. <u>제7조제3호 또는 제4호</u>
<u>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	2
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u>&lt;삭 제&gt;</u>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	
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	정보통	신부
장관은 제	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기	갱신을 한	사람이	이 다
음 각 호의	의 어느 혀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 5	및 갱
신된 등록	을 취소하	여야 현	한다.

-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 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 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복권된 경우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 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

취소) ①
1. <u>제7조제3호 또는 제4호</u>
O O (청체기 가 O )
<ul><li>2. · 3. (현행과 같음)</li><li>② (현행과 같음)</li></ul>
(137 ED)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제7조(등록거부)

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7. (생략)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생략)

•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3. ~ 7.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취소)
제1호 또는 제4호
1. • 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4. (현행과 같음)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u>&lt;삭 제&gt;</u>
<u>자</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u>&lt;삭 제&gt;</u>
<u>사람</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6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우주개발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2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u>&lt;</u> 삭 제>
<u>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원자력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1. 피성년후견인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u>람</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